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0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매립시설 []설치 []정기 []사용종료·폐쇄 []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(사용종료·폐쇄검사 80일)

신청인	①상호(명칭)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	
	⑤주소지(사무실)	(전화번호:)	

⑥업종			⑦승인·허가번호	제 호
⑧ 승인 (허가) 내용	매립대상 폐기물			
	매립면적	(㎡)	매립용량	(㎥)
	침출수 처리시설	처리방법		
	기타	처리용량		(㎥/일)
⑨사용개시 예정일			⑩사용종료 예정일	
⑪검사를 받으려는 날		. . .		
⑫시설종류		[]관리형 매립시설 []차단형 매립시설		
⑬설치장소(주소)		(전화번호:)		
⑭매립면적		(㎡)	매립용량	(㎥)
⑮침출수 처리시설		(㎥/일)	그 밖의 사항	
⑯최종복토 예정면적 *(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)*		(㎡)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·제2항, 제50조제1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,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([]설치, []정기, []사용종료·폐쇄, []사후관리 정기)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검사기관의 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첨부서류	1. 설치 · 정기 검사의 경우 가.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.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.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(면적이 1만㎡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㎥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,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마.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) 2. 사용종료 · 폐쇄 검사,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.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.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. 사후관리계획서(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 라.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(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,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사	→	결재	→	검사결과서 발급
신청인				검사기관				